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기타/도난

2. 보험상품의 명칭 : 도난보험

3. 보험의 목적

가. 동산 및 부동산 (순수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나. 법률상의 배상책임
다. 개인 및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적용계약의 경우 일시납, 2회분납, 4회분납으로 할 수 있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나.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보험료의 반환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약관대출 : 회사는 약관 대출을 하지 않는다.
마. 보험 종목의 변경 :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바.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2)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기타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